

검 토 보 고 서

2025. 2. 14.(금)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우진 의원 외 6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출자 : 채우진 의원
- 제출일 : 2025. 2. 3.
- 회부일 : 2025. 2. 4. (의안번호 : 25-3)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수가 중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 「병역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1. 21.~1. 31.(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채우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수가 중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1항에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병역명문가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가문을 말함.

병역을 명예롭게 실천하신 병역명문가 가족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며, 공정한 병역의 표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종합검토의견

우리구 병역명문가 현황을 보면 2025년 1월 현재 134가문이 등록되어 있고, 예산상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3대 가족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마포구 구립도서관 사용료, 마포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 이미 감면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개정 이후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등 후속조치
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복지정책과	최은영 (8810)	김희선 (88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신설 항목(진료비) 추가 및 부칙 신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제2항제9호,
병역명문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진료비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병역명문가의 ‘진찰료·처방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금액 추정

구분	병역명문가 연1회 이용시 (처방전500원×134가문×3명×1회)	병역명문가 연5회 이용시 (처방전500원×134가문×3명×5회)	비고
금액	201,000원	1,005,000원	17문은 3명~10명

※ 보건행정과-1237(2025. 1. 21.)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정우철
연 락 처	02-3153-880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진료비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조례임

2. 미첨부 근거 규정(제12조제2항에 미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진료비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유연
연 락 처	02-3153-9011

참 고 자 료

1. 관계법규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4.]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제2조(정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마포구 및 서울시 병역명문가 지정 현황

구 분	현재('25. 1월기준)		최근 5년('20~'24) 내 선정	
	가문 수	이행자 수(명)	가문 수	이행자 수(명)
서울시	3,436	16,150(추정)	2,571	12,084(추정)
마포구	134	630(추정)	106	500(추정)

※ 서울지방병무청 자료

3. 서울시 자치구 병역명문가 보건소 진료비 지원 현황

- 병역명문가 조례: 11개구
(종로, 중, 중랑, 강북, 도봉, 노원, 금천, 동작, 관악, 강남, 송파)
- 보건소 조례: 17개구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4. 우리구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 현황

1) 마포구립 체육시설 (50% 할인)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2) 마포구립 도서관 (30%~50%할인)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50%	3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50%	30%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3) 마포구 공영 주차장 (20%할인)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주차 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 한다.

